

2024년 항공기상청 기간제 근로재방재기상지원관 채용공고

2024년 항공기상청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항공기상청장

1. 채용내용

- 채용인원: 1명(방재기상지원관)
 - 근무기간: (기간제) 2024. 1. 1.~2024. 12. 31.까지
 - 담당업무
 - 지역관제센터에 공역기상예보 자문 및 브리핑(정기, 수시)
 - 저고도 기상지원(상담) 및 브리핑(정기, 수시)
 - 저고도 항공기상정보 작성 및 제공, 동영상 제작(정기, 수시) 지원
 - 위험기상 시 위험기상분석서 작성 및 제공, 동영상 제작(수시)
 - 저고도 운항자·관제사 등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 지원
 - 항공기관측보고(AIREP) 자료 수집 및 입력
-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기간제) 2024. 1. 1.~2024. 12. 31.까지(수습 3개월)
 -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종합점수 70점 이상)에 따라 정식 채용함
- 근무지: 항공기상청 예보과 및 인천지역관제센터(ACC)(인천광역시 중구)
- 보수: 약 240만원(월급제/ 기본급, 정액급식비 포함, 세금 공제 전)
 - 4대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요건 충족시)
- 근무시간: 주 5일(토·일요일 근무/ 평일 2일 휴무) 07:30~16:30(휴게시간 12:00~13:00)
 -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

- 「기상청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상청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 사유)

- 공무원 근로자 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자

| 응시자격요건 | |
|--------|---|
| 경력 |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 학위 |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 자격증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 우대요건 | |
| 경력 |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경력 또는 학위 또는 자격증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관련 경력) |
| 학위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한 학위는 우대 제외) ※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
| 자격증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한 자격증은 우대 제외)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분야별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
| 관련분야 | |
| 경력 | - 기상 관련: 항공기상, 수치예보, 위성, 레이더 등 - 항공 관련: 저고도 항공기, 항공운항, 관제 등 |
| 학위 | - 기상 관련: 대기과학, 대기환경과학, 천문대기과학 등 - 항공 관련: 항공운항학, 항공교통학 등 |
| 자격증 | - 기상 관련: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 항공 관련: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 학위, 자격증 기준 중 해당되는 항목 하나만 선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3. 12. 12.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3. 11. 20.)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시간 명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 판단을 위해 상세히 기재(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 oo과/ 연구원/ 항공기상분석

항공기상청 공고 제2023-6호

- ※ 경력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 양식에 담당업무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시스템 문제로 기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자가 수기로 추가 기재하거나 [붙임8] 양식을 사용하여 증빙
 -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명시(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본 첨부
 -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 제출

다. 가점 및 우대사항

- 장애인(3% 가점)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4.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 자격·경력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 (소극적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일 경우 응시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적극적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 서류전형 기준(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관련분야 근무경력, 학위, 자격증), 장애인 가점
- 2차 시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15분 이내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해 상·중·하 평가
 -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이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채용일정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
| '23. 11. 9.(목) ~'23. 11. 20.(월) | '23. 11. 9.(목)~ '23. 11. 20.(월) 18:00 | '23. 12. 5.(화) | '23. 12. 12.(화) | '23. 12. 21.(목) |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및 항공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11. 9.(목)~2023. 11. 20.(월) 18:00
- 접수방법: 전자우편(sunah@korea.kr)접수
 - ※ 제목 및 파일 제목을 ‘응시원서(성명)_방재기상지원관’ 으로 하여 송부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전자우편으로 개별 통보 예정
 -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7. 제출서류(붙임)

- 응시원서(붙임1) 1부
- 자기소개서(붙임2) 1부
- 직무수행계획서(붙임3)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4) 1부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5) 1부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붙임6) 1부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붙임7)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 장애인 등록증 1부(해당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보훈(지)청 발급) 1부(해당자)
 -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자필 서명 기입
 - ※ 주민등록초본, 학위, 자격증, 재직·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 응시원서 제출 시, 서명이 들어간 쪽은 스캔 후 삽입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알림·소식-채용 및 항공기상청 홈페이지 알림·자료-공지사항을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경력확인을 위하여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예: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 증명서) 등) 중 1종 및 소득금액 증명(국세청 발급)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임
-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032-740-2803)로 문의

9.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붙임9)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별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붙임10)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10. 직무기술서

| 직무분야 | | 임용예정 부서 | 선발예정인원 |
|--|--|--|--------|
| 기간제근로자 (방재기상지원관) | | 항공기상청 예보과 | 1명 |
| 주요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관제센터에 공역기상예보 자문 및 브리핑(정기, 수시) ○ 저고도 기상지원(상담) 및 브리핑(정기, 수시) ○ 저고도 항공기상정보 작성 및 제공, 동영상 제작(정기, 수시) 지원 ○ 위험기상 시 위험기상분석서 작성 및 제공, 동영상 제작(수시) ○ 저고도 운항자·관제사 등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 지원 ○ 항공기관측보고(AIREP) 자료 수집 및 입력 | | |
| 필요역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직업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정의식(책임감, 사명감), 공동체의식 ○ (직무 역량) 기상예보분석 및 방재기상지원 | | |
| 필요지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기상 및 항공기상 지원을 위한 기상분석 지식 | | |
|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청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 | 자격요건 | <p><다음의 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 중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학위)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자격증)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
| 우대요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경력 또는 학위 또는 자격증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관련 경력)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한 학위는 우대 제외) ※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한 자격증은 우대 제외)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분야별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 |
| 가점 및 우대사항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장애인 등록 소지자)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
| <p>【관련분야 경력】 기상 관련(항공기상, 수치예보, 위성, 레이더 등), 항공 관련(저고도 항공기, 항공운항, 관제 등)</p> <p>【관련분야 학위】 기상 관련(대기과학, 대기환경과학, 천문대기과학 등), 항공 관련(항공운항학, 항공교통학 등)</p> <p>【관련분야 자격증】 기상 관련(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항공 관련(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p> | |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 시 지원자 부주의에 따른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인적사항

- ① 접수번호: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요건: 공고문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
- ③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④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⑤ 병역사항: 남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 또는 면제사유를 기재함

2. 응시자격 사항: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응시자격 경력 요건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9년의 경력이 있을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4년의 경력은 ‘2.응시자격 사항’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으로 작성한 경력 외 5년의 경력은 ‘3.우대 사항’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3. 12. 12.)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항공기상청 공고 제2023-6호

【학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3. 12. 12.)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학위종류·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3. 12. 12.)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3. 우대 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경력 또는 학위 또는 자격증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2023. 11. 20.)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학위】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한 학위 외 석사 이상의 학위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2023. 11. 20.)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학위종류·취득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한 자격증 외 자격증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2023. 11. 20.)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일·자격 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가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여부(해당자만 기재)

- ※ 자필서명 필수(자필서명하여 스캔한 응시원서를 한글파일에 삽입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붙임 2)

자기소개서 (2매 이내)

본인이 지원하게 된 동기, 과거 경력 및 업무의 전문성 등 채용 직무에 맞는 내용으로 자유롭게 구성 및 작성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 .

작성자 ○ ○ ○ (인/서명)

(붙임 3)

직무수행계획서 (2매 이내)

경력 또는 입사 이후 수행할 업무계획 작성 등 채용 직무에 맞는 내용으로 자유롭게 구성 및 작성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 .

작성자 ○ ○ ○ (인/서명)

《작성요령》

- 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는 본 양식 기초로 한글파일로 작성, 작성자 확인 서명(또는 인) 후 스캔하여 제출
- ②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 동기, 관련분야 경력·활동과 향후 직무수행계획 및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③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분량은 각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붙임 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 | | | | | | |
|------|------|-----------------|------|------|----------|---------------------|
| 채용기관 | 기관명 | 항공기상청 | 채용방법 | 공개채용 | 채용직위(직급) | 기간제근로자 (방재기상지원관) |
| | 채용사유 | 항공위험기상 대응 업무 지원 | | | | |

| | | | | |
|----------------|-----|------|--------|-------------|
| 응시대상자 (확인인) | 성명 | 주소 | | |
| | 연락처 | 생년월일 | 채용 예정일 | 2024. 1. 1.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 | |
|------------|--|---------------------------|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② 예외 해당 여부 |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예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6)

[별지 제14호서식]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기간제 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로 채용됨에 있어 「기상청 공무원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3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항공기상청장 귀하

(붙임 7)

[별지 제19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 | |
|---|--|
| <p>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p> |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
| <p>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p> |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
| <p>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p> |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
| <p>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p> |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
| <p>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p> |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
| <p>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p> |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
| <p>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p> | <p>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p> |
| <p>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p> | <p>해당 <input type="checkbox"/></p> |
| <p>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p> | <p>해당 <input type="checkbox"/></p>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지원자

(서명)

(붙임 9)

공정채용 확인서

본인은 기상청 채용전형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인)

항공기상청장 귀하

(붙임 10)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외 인력으로 허용